

# 「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 → 2023. 9. 4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

바뀜 5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12/compare?from=1312&to=146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7:5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제2조(적용범위)</b><br>이 규정은 입학관리본부가 진행하는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적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2조(적용범위)</b><br>이 규정은 입학처가 진행하는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적용한다.<br><개정 2023-09-04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6조(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)</b><br>① 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22-01-17><br>② 편입학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6조(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)</b><br>① 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22-01-17><br>② 편입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23-09-04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24조(기구)</b><br>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.<br>1.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<br>2.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<br>3.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<br>4.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<br>5.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<br>6.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24조(기구)</b><br>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3-09-04><br>1.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<br>2.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<br>3.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<br>4.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<br>5.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36조(구성)</b><br>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br>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. <개정 2022-01-17><br>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br>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br>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| <b>제36조(구성)</b><br>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br>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사정관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. <개정 2022-01-17><br>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br>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br>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39조(구성)</b><br>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,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.<br>② 내부위원은 부총장(위원장), 입학처장(서기), 입학팀장(간사)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-01-17><br>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| <b>제39조(구성)</b><br>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,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-09-04><br>② 내부위원은 입학처장(위원장), 입학사정관팀장(서기)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-01-17><br>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|

## 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입학관리분부가"를 "입학처가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및 약학대학 입학전형"을 "입학전형"으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기구)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.

1.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
2.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
3.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
4.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
5.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

제36조제2항 중 "입학팀장"을 "입학사정관팀장"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부총장"을 "입학처장"으로 하고, "구성한다."를 "구성한다. <개정 2023-09-04>"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"부총장(위원장), 입학처장(서기), 입학팀장(간사)으로"를 "입학처장(위원장), 입학사정관팀장(서기)으로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